

임시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승인의 건

가. 합병의 목적 : 계열회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주주가지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세종을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나. 합병의 방법 : 세종투자(주)는 (주)세종을 흡수합병하며, 세종투자(주)는 존속하고, (주)세종은 해산함.

다. 존속회사의 상호 : 존속하는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세종"으로 하며, 영문으로는 "Sejong Corp."로 표기한다.

라.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 합병비율

구분	세종투자(주)	(주)세종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주당평가가액	5,025원	22,149원
합병비율	4.4077612	1

- 산출근거 : 비상장법인인 당사와 (주)세종의 합병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주식가치를 산정함. 합병비율의 산출은 평가기관인 세무법인 다올평가의견에 따름.

마. 본건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의 교부 : 합병으로 (주)세종이 보유한 세종투자 주식을 세종투자(주)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합병기일 현재 (주)세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그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함

바. 합병교부금 :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 가격은 주주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수예정가격 4,610원)

※ 매수예정가격 = (주당순자산가치+대주주 할증에 따른 주당평가가액)/2

2)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상법 제522조 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한해 주식매수대금이 지급됨. 단,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아. 합병일정

구분	일정
합병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2019.03.11(월)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공고	2019.03.13(수)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19.04.03(수)

주총소집통지		2019.04.12(금)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9.04.12(금)
	종료일	2019.04.26(금)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2019.04.29(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9.04.29(월)
	종료일	2019.05.20(월)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9.04.29(월)
	종료일	2019.05.30(목)
합병기일		2019.05.31(금)
합병종료보고이사회		
합병등기에정일(소멸/변경등기에정일)		

자. 기타사항 : 합병일정은 관련법규의 개정 및 기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합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19년 3월 11일자 전자공시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합병사항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자기 소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주 확정 기준일(2019년 4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에 한해 주식매수대금이 지급됩니다. 단,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첨부1)'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주주총회 1영업일전(2019년 4월 26일)까지 당사 경영관리팀으로, 실질주주(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전 3영업일전(2019년 4월 24일)까지 거래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2019년 4월 25일) 전까지 예약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첨부2)'를 작성하여 명부주주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종료일까지(2019년 5월 20일) 당사 경영관리팀으로, 실질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2019년 5월 16일)까지 거래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약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 2019년 4월 29일 ~ 2019년 5월 20일까지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일자

1) 주식매수 가격은 주주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수예정가격 4,610원)

※ 매수예정가격 = (주당순자산가치+대주주 할증에 따른 주당평가가액)/2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

상법 제374조의 2에 따라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월 내

4) 주식매수대금 지급방법

- ① 명부주주 : 주주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② 실질주주 : 해당 거래증권회사 계좌

4. 기타 사항

- 1) 일단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2)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은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제출 시한이 1~2일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할 주식 매수청구대금의 합계가 금 일십억(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5) 명부주주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주권포함)' 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 세종투자(주) 경영관리팀
 - 전화 및 팩스 : 070-7979-6150 / 02-554-1114

(첨부 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결의사항(합병)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주
반대의사 주식수	주

2019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세종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절 취 선 -----

(첨부 2)

주식매수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주
반대의사표시주식수	주
주식매수청구주식수	주

2019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세종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